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문신학 석유산업과장(02-2110-4890), 전동욱 사무관(5457)

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(혼합판매), 8월부터 단계적 시행

◈ 구분저장 없이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석유제품 또는 수입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8월부터 제도적으로 가능

◈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수직계열화 완화 및 경쟁 활성화, 그간의 관행적 혼합판매의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적 가격안정 기대

□ 지식경제부는 7월 31일, 「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」(4.19일)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 시행방안에 대해, 그간 정유4사와 협의한 결과를 발표함.

○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란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,

○ 정유사-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의 물량을 혼합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

□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, 정유사간 경쟁 촉진,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왔음

①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가 시행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신규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, 현 상황에서도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 비율만큼 새로운 경쟁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

② 그간 주유소 단계에서는 이미 관행적으로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가 이루어져 온 바(전체물량의 약 15% 추정), 금번 조치를 계기로 품질관리, 책임소재 등 관련 사안들이 제도화 될 수 있게 되었음

③ 또한,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일지라도 희망하는 경우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가 가능해짐에 따라,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□ 금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는 구분저장 없는 混油방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, 이에 수반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정유사들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였음(별첨 참고)

* 혼합판매는 '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('10.11월)'에 따라 처음에는 구분저장·표시를 전제로 추진되었으나, 동 기준 변경 이후에도 전량 구매계약 관행과 구분저장을 위한 비용 소요에 따라 시장에서 활성화 되지 못함

□ 아울러, 그간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임

○ (품질문제)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는 사전에 한국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석유만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며, 연구용역(한국석유관리원, '12.5월) 결과 정품 제품 혼합시 품질, 연비 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고됨

* (참고)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 주유소에서만 주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차량 주유시 연료탱크 내에서 여러회사 제품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

○ (가짜석유) 정품석유만을 혼합하는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는 가짜석유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,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프로그램등을 활용하여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

○ (소비자 선택권) 정유사와 협의하에 혼합판매 주유소內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예정

□ 금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 방안은 이후 공정위의 '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('12.4월)'에 따른 표준계약서 법률 검토를 거쳐, 시장에서 개별 주유소-정유사간 계약변경에 따라 8월중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

□ 금번 방안의 추진에 따라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효과 기대

○ 다만, 혼합판매 희망 주유소들 중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, 단기적으로 혼합판매로 인한 전반적 가격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나,

○ 희망 주유소가 혼합판매 물량만큼 저렴한 석유제품을 확보할 경우 일정부분 판매가격 인하*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* 例示: 주유소가 혼합판매 20% 물량을 50원 저렴하게 구입 → 판매가격 10원 (50원 X 20%) 인하 가능

- 특히,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전자상거래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
석유제품 복수상품 자율판매(혼합판매) 실시방안

1. 추진 경과

○ 그간 혼합판매는 '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(공정위, '10.11월)'에 따라 처음에는 구분저장·표시를 전제로 추진

○ 동 거래기준 변경('11.9월)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혼합판매가 가능하게는 되었으나,

- 정유사-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관행과 구분저장을 위한 별도 저장시설 확보 비용 소요에 따라 시장에서 활성화에 한계

2. 시행 조건

① (물량확인) 정유사-주유소간 계약에 의한 혼합판매 비율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물량확인 방안을 양자간 합의

-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유사 또는 주유소가 석유공사를 통해 확인 가능

② (인센티브 차등) 전량구매 계약시와 비교하여 혼합판매 경우 보너스 카드 등 인센티브가 차등화되는 것을 인정

- 차등이 과도하지 않은 합리적 범위*내에서 정유사-주유소간 계약에 따라 결정

* 例示: 전량구매계약시 인센티브 대비 혼합판매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

③ (품질·제조물책임) 혼합판매에 따른 품질 및 제조물 책임은 1차적으로 주유소 단계에 있음을 상호간에 합의 전제

*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(공정위, '12.4월)

④ (無/有채권주유소) 전량구매계약을 조건으로 정유사와 시설 지원 계약 등을 체결한 주유소(유채권주유소)는 계약 조건에 따라 혼합판매 제한* 가능

*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(공정위, '11.9월)
* 정유사 폴 주유소 중, 직영 제외 총 10,346개중 무채권 주유소 6,075개(58.7%)

⑤ (혼합판매 표시) 정유사-주유소간 협의하에 혼합판매 주유소內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 필요

3. 혼합판매 제도개선

①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[1](공정위, 4.25일)하고, 석대법 시행령 개정중[2](지경부, 입법예고중)

1) 주유소의 의사에 반하여 전량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예시에 추가
2) 혼합판매 제한행위를 건전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

② 혼합판매의 표시및광고에관한법률 예외를 규정*하는 석대법 개정안 입법 예고중

*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적용되지 않음

4. 향후 추진 일정

○ 공정위, '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('12.4월)'에 따라 정유사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(8월중)

○ 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중 혼합판매 희망 주유소부터 개별 계약 변경(8월중~)

○ 지경부 및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장에서의 이행상황을 확인(8월말~)

※ 참고1: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 관련 자료
참고2: 정유사별 석유제품 혼합에 따른 품질 및 차량성능 평가 연구 결과(요약)

참고1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 관련 자료

주유소 설문조사

□ 주유소는 응답자의 74%(응답자 5,845개소 중 4,302개소)가 전량구매계약 변경을 희망('12.5월, 주유소 協 수요조사)

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

□ 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 제품의 품질이나 브랜드보다는 가격, 주유소 위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유소를 선택하고 있음

* 주유소 선택시 가격(56.6%), 거리·위치(14.8%), 제휴카드할인(10.0%), 제품의 품질(5.0%), 브랜드 이미지(3.4%) 순으로 고려('08년 소비자인식도 조사)

정유사간 제품 교환 비율

□ '11년 기준, 석유제품(휘발유, 등유, 경유) 중 40.4%가 정유사 단계에서 상호 교환·판매되고 있음

참고2 정유사별 석유제품 혼합에 따른 품질 및 차량성능 평가 연구 결과 (요약)

□ **연구개요**

○ 연구수행기관: 석유관리원 녹색기술연구소('10.11월 ~ '11.3월)

□ **연구내용: 정유사별 휘발유 및 경유를 개별 또는 균등하게 혼합하여 품질 및 차량성능 평가 수행**

○ 정유사 제품별 혼합에 따른 첨가제 기능저하 등 간섭효과 검토

*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에서 정한 국내 자동차연료유 품질항목 평가
(휘발유 – 옥탄가 등 16항목, 경유 – 세탄가 등 16항목)

○ 정유사 제품별 혼합에 따른 차량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

＊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서 정하는 경유 및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평가

○ 평가시료 내역 : 정유사별 혼합 가능한 30가지 유형 (동량혼합)

구분	세부내역	품질	차량성능	비고
정유사별 개별제품*	A, B, C, D	○	○	4가지
2개 정유사 혼합	A+B, A+C, A+D, B+C, B+D, C+D	○	-	6가지
3개 정유사 혼합	A+B+C, A+B+D, A+C+D, B+C+D	○	-	4가지
전체 정유사 혼합	A+B+C+D	○	○	1가지
합 계		15가지	5가지	
- 품질분석 : 경유 15 + 휘발유 15 = 30가지 - 차량성능 : 경유 5 + 휘발유 5 = 10가지				

＊ 경유 : 동절기 제품

□ 연구결과

○ 품질평가 결과

- **(휘발유)** 기능성 첨가제 투입에 따른 주요 영향 품질항목인 옥탄가, 동판부식, 산화안정성 등은 정유사간 혼합에 의한 특별한 영향 없음

- **(경유)** 기능성 첨가제 투입에 따른 주요 영향 품질항목인 세탄가, 저온특성(유동점, 필터막힘점), 동판부식, 윤활성 등은 정유사간 혼합에 의한 특별한 영향 없음

○ 차량 성능평가 결과

- **(휘발유 및 경유)** 4개 정유사 혼합 연료의 에너지소비효율은 각 정유사의 개별 연료와 동등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배출가스 배출량 또한 시험용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내에서 동등한 수준을 보였음

□ 연구결론: 정유사별 제품간 혼합시 품질특성 및 차량성능은 혼합에 따른 상호영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